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7 2016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6년 2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다. 상정결과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3월 4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홍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역사편찬원이 신설됨에 따라(2015.1.1.) 재편된 시사편찬위원회 조직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회의 규정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을 신설함(안 제6조 및 제7조).
- 조직 신설에 따라 사무 수행 기관명(서울역사편찬원)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의견청취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협의 완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4)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반영,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0 기타

- (1) 입법예고(2015.8.27. ~ 9.1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역 사펀찬원이 신설됨에 따라(2015.1.1.) 사무 수행 기관명을 명확히 하고 재펅된 시사펅찬위원회 조직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위원회의 설치 규정, 회의 규정,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개정방식

- 개정안은 현행 조례 9개조 중 7개조의 조문을 수정하고 4개조의 조 번호를 수정하며 1개조를 삭제하는 한편 4개조를 신설하여 총 12개조로 하는 안임.
- 현행 조례는 1954년 3월 25일 제정되어 1982년 11월 25일 전 부개정한 이후 여섯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조문 뒤에 개정연혁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서울역사편찬원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조문 전 체를 재배열하고 표현을 정비해 전부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됨.

다. 신설 규정

- 개정안은 제2조(설치), 제6조(회의), 제7조(소위원회)제2항, 제9조
 (의견청취),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4개조와 1개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이를 조별로 보면

안 제2조(설치)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서울역사편찬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제89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편찬원(이하 이 절에서 "편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안 제6조(회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레」 제7조제1항제5호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 수"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 제7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7호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안 제9조(의견청취)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을 준용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조직개편 관련 개정 사항

○ 2015년 1월 1일 서울역사편찬원 조직 신설 전, 시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수행하기 위한 연구원 7명(임기제공무원), 일반직공무원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역사문화재과 소관 자문기관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 문화본부 소관 사업소로 서울역사편찬원이 신설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수행하는 연구원 10명과 일반직공무원 5명은 역사편찬원 소속이 되어 시사편찬위원회는 위원 21명만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이 되었음.

<서울역사편찬원 신설 전후 시사편찬위원회 현황>

구분	조직개편 전(~ 2014.12.31.)	조직개편 후(2015.1.1. ~)
주관부서	역사문화재과	서울역사편찬원 (2015.1.1. 조직 신설)
구성	외부위원 및 연구원, 일반직	외부위원
	○ 총 31명	○ 총 21명
인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위원 19명(당연직 1명 포함)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위원 19명(당연직 1명 포함)
	- 연구원 7명(임기제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3명	※ 연구원 10명(임기제공무원), 일반 직공무원 5명은 역사편찬원 소속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종전 시사편찬위원회 소속에서 서울역사편찬원 소 속으로 변경된 연구원 및 보조원 관련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5조(연구원 및 보조원) ① 위원회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임연구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전임연구원은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 현행 조례 제6조 중 연구원 간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종전 역사문화재과장이 맡던 간사를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장이 맡도록 하고 종전 역사문화재과 담당 팀장이 맡던 서기는 서울역사 편찬원에 팀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특정하지 않았으며

서울역사편찬원 신설에 따라 간사와 서기의 처리 사무를 구체화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및 전임연구원 간사 각 1인 을 둘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의 과장 및 담당 팀장이 되며, 연구간사는 연 구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연구간사는 위원회의 연구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간사와 연구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식제>

마. 기타 조문 수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에 명시해야 할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역사편 찬원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을 반영한 개정 외에 기타 개정사항을 조 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안 제2조에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규정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설 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했으나 "추진을" 다음에 "위하여"가 누락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역사 자료의 수</u> 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서울특별시 시사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	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	<u>함을 목적으로 한다.</u>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3조는 조 제목을 "심의사항"에서 "기능"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자문"으로 변경했는데

위원회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과 달리 심의·자문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이 심의보다는 자문에 가까우며 법적 지위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이므로 "심의"보다 "자문"이 더정확한 표현이라 판단됨.

또한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을 규정하는 조 제목은 통상적으로 "기능"을 사용하므로 "심의사항"을 "기능"으로 수정하는 것도 조례를 다듬는 조치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제3조(기능) <u>각 호의</u>
<u>심의</u> 한다.	<u>자문</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정 <u>각분야</u> 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3 <u>각 분야</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사"를 "서울역사"로 표현을 가다듬고, 안 제2조에서 이미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약칭을 사용했으므로 약칭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하며,

위원 선임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 여성정책담당관의 개선권 고를 반영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 정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u>제2조(</u>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u>위원장·부위원</u>	<u>제4조(</u> 구성 및 임기) ① <u>위원장과 부위</u>
<u>장 각 1인</u> 을 포함한 <u>22인</u> 이내의 위원으로	<u>원장 각 1명 22명</u>
구성하며, <u>약간인의고문을</u> 둘 수 있다.	<u>약간 명의 고문</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③ <u>서울역사</u>
과 경험이 풍부한 <u>자중</u> 에서 <u>서울특별시장(이</u>	<u>사람 중</u> <u>성별을 고려하여 시</u>
<u>하 "시장"이라 한다)</u> 이 위촉하는 <u>자와</u> 서울특	<u> 장 사람과</u>
별시 소 속공무 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u>자</u>	<u>사람으로</u>
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
	<u>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u>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5조와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u>통괄</u>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통할</u>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사</u> 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불 <u>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③ <u>위원장 및 부위원장</u> 이 모두 <u>사고가 있을 때</u> 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 의출석 및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범 범 <u>위에서</u>

○ 그 외 회의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은 삭제하고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장이 따로 정한다.	

바. 부칙

○ 안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일반적 경과조치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는 현행 조례가 새로운 조례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와 조례의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과도적 조치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가 한 행위와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사. 수정의견

○ 안 제1조 중 "추진을" 다음에 "위하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진을"을 "추진을 위하여"로 수정하여야 함.

<수정의견>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u>추진을 위하여</u>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수정안의 요지

개정안에 빠뜨린 글자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음(안 제1조 중 "추진을"을 "추진을 위하여"로 함).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997 번호 제안연월일 : 2016년 3월 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에 빠뜨린 글자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음.

2. 주요골자

○ "추진을"을 "추진을 위하여"로 수정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추진을"을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	제1조(목적)
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u>추진을</u> 서울특	<u>추</u> 진을 위하여
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 4.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③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시사편찬 업무 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가 한 행위와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